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2024. 8.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24-89
- 나. 제안자: 홍지광 의원 외 9인
- 다. 제안일자: 2024년 8월 16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4년 8월 19일(월)

### 2. 제안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공공자금 이자수익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적용 범위 및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 라.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평가지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 마. 금고운용보고서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 및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9조
- 3) 「지방회계법」 제38조
- 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2024. 7. 23. ~ 7. 29. (제출된 의견 없음)

## 5. 검토보고

### 가. 제정 목적

- 동 조례 제정안은 2024년 8월 16일 홍지광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마포구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전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 동 제정안은 자금 운용의 유연성은 높으나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의 대기성 자금의 비중을 낮추고, 자금운용의 유연성은 제한되나 이자율이 높은 정기에금의 예치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의 필요에 따라
-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운용 원칙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더 높은 이자 수입을 창출하는 등 구 재정 건전성 제고에 일조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sup>1)</sup>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사목<sup>2)</sup>에서 예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휴자금에 대한 발굴과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사례<sup>3)</sup>가 계속되고 있음.
- 구 금고의 경우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자금 성격에 따라 공공자금을 예치할 수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국·시비 재정의존도가 높고 복지재원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나 기금의 유휴자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방안을 통해 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 구 금고 지정 현황 >

금 고 명	회 계 명
우리은행 마포구청점	일반회계 (1), 특별회계 (5), 기금(15)

1)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3)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16곳(2023. 7. 3. 전남 해남군 최초 제정)이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강북구에서 의원 발의로 2024. 6. 28. 공포함. (붙임1: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 나. 조문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본칙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적용 범위(안 제4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안 제5조), 공공자금의 운용 원칙 및 평가지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금고운용보고서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등을 규정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공공자금”<sup>4)</sup>과 “금고”의 용어를 정의함.
- 안 제3조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유휴자금 운용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는 구청장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수립하는 관리계획과 별개로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공자금 운용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
- 참고로, 공공자금의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구청장)의 예산편성권에 실제적인 제약을 가한다고 볼 수 없고, 공공자금의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있어서 구청장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져 구청장의 예산집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4)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마포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으로 정의함.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해석(법제처 2023. 4. 3. 회신 23-0012 의견제시 사례)에 따라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저촉되는 바가 없어 조례 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는 유휴자금의 이자 수입을 최대화하기 위해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 예탁, 만기일 전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 최소화를 규정하였음. 특히,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sup>5)</sup>으로써 대기성 자금의 성격을 지닌 공공예금을 최소화하여 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마포구 이자수입 현황(2024. 4. 30.기준) >**

(단위: 천원)

구 분	이자 수입
일반회계	1,814,235
특별회계	362,921

※ 자료 : 마포구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 2023회계연도 결산 상 기금 보관 현황 >**

(단위: 원)

연번	기금명	공금예금	정기예금
1	남북교류협력기금	76,580,730	568,966,187
2	재난관리기금	31,603,756	6,739,219,781
3	자활기금	20,908,107	1,631,037,123
4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492,251,489	1,570,000,000
5	양성평등기금	80,301,501	2,123,000,000
6	중소기업육성기금	2,659,069,066	1,581,052,682
7	공유재산관리기금	4,642,431,091	25,000,000,000
8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171,446,991	750,000,000
9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454,469,083	600,000,000
10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4,199,556,502	4,081,778,150
11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405,937,282	520,000,000
12	옥외광고발전기금	420,891,715	817,703,811
13	도로굴착복구기금	1,026,806,308	1,800,000,000
14	식품진흥기금	715,296,983	2,000,000,000
15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5,420,314,000

5) 유휴자금 운용 부서: 재무과(일반회계, 특별회계), 각 담당부서(기금)

- 안 제7조는 평균이자수익률, 유희자금 평균수익률,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등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평가지수를 개발하고 그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전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결과는 안 제5조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이러한 평가결과의 연차별 환류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침으로 집행기관에서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공공자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는 구청장은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은 ‘금고운용보고서<sup>6)</sup>’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이는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행정 감시 및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여 공공성 및 수익성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되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공무원을 외부 기관에 교육·연수 의뢰 실시,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는 공공자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그 운용의 효과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마포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통칭하여 ‘공공자금’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6) 금고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구청장에게 보고함.

- 공공자금의 체계성을 확립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향후 이자 수입의 극대화를 통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명시한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그 입법적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임 1****「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정 현황(2024.7.기준)**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 및 개정
1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024. 3. 20.
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024. 5. 10.
3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024. 6. 5.
4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024. 3. 19.
5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023. 9. 26.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024. 3. 7.
7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024. 6. 3.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진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024. 7. 1.
9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024. 6. 28.
10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024. 6. 27.
1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024. 4. 16.
1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024. 4. 30.
13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024. 2. 19.
14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024. 3. 25.
15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sup>7)</sup>	2024. 1. 2.
16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024. 1. 4.

7) 지자체 최초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던 해남군에서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의 해남군 공공자금의 적용금리 등 공개에 관한 내용이 금융기관에게 있어 평균이율과 관련된 금리도 매우 중대한 “경영·영업상의 기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있어,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 혹은 영업상 비밀 등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위배 우려가 있어 해당 조문을 개정(삭제)했음.(2024.1.2.)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재정자금의 통합운동) ① 통합재정자금은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경우에는 통합재정자금의 운용에 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동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출관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운동기록부를 비치하여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 가용자금의 규모와 가용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⑤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이 발생하면 통합지출관 관리계좌에 이체하여 통합지출관이 유휴자금의 운용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통합지출관은 자금 수입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용 일정에 따라 여유자금을 구분하고, 여유자금을 정기에금으로 가입하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에금을 해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자금의 세입, 과오납 금액 및 세출자금의 배정액, 환수액, 지출액 및 반납액, 전입·전출금액 등의 일일현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고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현황 파악 및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